

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·시공업의 시설·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(제18조제4항 관련)

1. 시설 및 장비

가. 사무실 및 실험실

나. 제도설비 한 세트 이상 또는 제도설계(CAD)를 할 수 있는 컴퓨터 한 대 이상

다. 다음 항목을 측정·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

- 1) 총대장균군수
- 2) 결합잔류염소
- 3) 탁도(NTU)
- 4) 삭제 <2017. 12. 12.>
- 5)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(BOD)
- 6) 냄새
- 7) 색도(도)
- 8) 총질소(T-N)
- 9) 총인(T-P)
- 10) 수소이온농도(pH)
- 11) 염화물
- 12) 농업용수 측정항목: 알루미늄(Al), 비소(As), 총붕소(B-total), 카드뮴(Cd), 6가크로뮴(Cr^{6+}), 코발트(Co), 구리(Cu), 납(Pb), 리튬(Li), 망간(Mn), 수은(Hg), 니켈(Ni), 셀레늄(Se), 아연(Zn), 시안(CN),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(PCB), 전기전도도

비고

1. 제도설비 및 실험기기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제도설비 및 실험기기는 해당 영업으로 한정하여 사용해야 한다.
2. 각 측정 항목에 대하여 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기간에는 같은 항목의 측정에 필요한 실험기기를 갖추지 않을 수 있으며, 측정항목 전부에 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기간에는 실험기기 및 실험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.

2. 기술인력

용량	기술인력
10,000m ³ /일 이하	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명(각각 다른 분야에 대한 경력자로 한다) 가) 수질환경기사 나) 일반기계기사·건설기계기사 또는 기계설계기사 다) 화공기사 라) 토목기사 마) 전기기사·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기능장

10,000m ³ /일 이상 50,000m ³ /일 미만	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명(각각 다른 분야에 대한 경력자로 한다) 가) 수질환경기사 나) 일반기계기사·건설기계기사 또는 기계설계기사 다) 화공기사 라) 토목기사 마) 전기기사·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기능장
50,000m ³ /일 이상 100,000m ³ /일 미만	1) 수질관리기술사 1명 2)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명(각각 다른 분야에 대한 경력자로 한다) 가) 수질환경기사 나) 일반기계기사·건설기계기사 또는 기계설계기사 다) 화공기사 라) 토목기사 마) 전기기사·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기능장
100,000m ³ /일 이상	1) 수질관리기술사 1명 2)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3명(각각 다른 분야에 대한 경력자로 한다) 가) 수질환경기사 나) 일반기계기사·건설기계기사 또는 기계설계기사 다) 화공기사 라) 토목기사 마) 전기기사·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기능장

비고

- 기술인력란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은 「국가기술자격법」 제10조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국가기술자격을 말한다.
- 1의2. 해당 분야의 경력은 기사 또는 기능장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.
- 수질관리기술사는 상하수도기술사, 화공기술사, 산업기계설비기술사, 기계공정설계기술사, 공학박사(수질분야를 전공한 사람만 해당한다) 또는 수질환경기사 자격 취득 후 수질오염방지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.
- 기사는 해당 분야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그 분야 또는 그 전문기술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.
-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·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설·장비 및 공통되는 기술인력 중 1명을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.
 - 가.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계·시공업을 등록한 자
 - 나. 「하수도법」 제51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·시공업을 등록한 자
 - 다. 「하수도법」 제52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을 등록한 자
-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·시공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기술인력인 토목기사 1명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.